

[비씨카드 paybooc(ISP)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/후 비교표]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⑥ "회원 인증"이란 공인인증서, 휴대폰, 신용카드 등의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"이용자"가 회원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⑥ "회원 인증"이란 인증서, 휴대폰, 신용카드 등의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"이용자"가 회원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</p>	<p>-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반영</p> <p>○ 공인인증서 → 인증서</p>
<p>⑬ "접근매체"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"이용자"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2.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</p>	<p>⑬ "접근매체"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"이용자"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2.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</p>	

<p>제3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</p> <p>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“회사”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“이용자”에게 이용대금명세서, 서면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, 이동통신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며, “회사”는 위 약관 변경 예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.</p>	<p>제3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</p> <p>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“회사”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“이용자”에게 이용대금명세서, 서면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, 이동통신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며, “”이용자”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.</p>	<p>- 이용자 계약해지 절차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약관 변경 통지 후 1개월 이내 계약 해지 가능 문구 명시
<p>(신설)</p>	<p>③ “이용자”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- 항목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용자 약관 동의 기준 명확화
<p>③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동일)</p>	<p>- 항목 철회</p>

<p>제9조("서비스"의 일시 중단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경우 "회사"는 사전 안내 없이 "서비스"를 일시적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"이용자"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</p> <p>5.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</p>	<p>제9조("서비스"의 일시 중단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경우 "회사"는 사전 안내 없이 "서비스"를 일시적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"이용자"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.</p> <p>5.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</p>	<p>-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반영</p> <p>○ 공인인증서 → 인증서</p>
<p>(신설)</p>	<p>부칙</p> <p>제 12 조 (적 용)</p> <p>본 약관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적용하고,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</p>	<p>- 부칙 조항 추가</p> <p>○ 변경 약관 적용일</p>